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280호

2. 발 의 자 : 성흠제 의원

3. 발의일자 : 2021. 4. 1.

4. 회부일자 : 2021. 4. 6.

Ⅱ. 제안이유

○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5조(우대)에 근거하여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제9조(사용료의 감면)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, 병역명문가 단체 경기 및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코자 함.

Ⅲ. 주요내용

○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함(안 제9조제1항제 3호라목 신설).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:「병역법」,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
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

3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 성흠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280호로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학교시설사용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건강한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널리 알리는 '병역명문가 선양 사업'을 2004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.
- 병역명문가란,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합니다.
-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병역명문가는 전국에서 6,395가문이 선정되었고 서울시에서는 1,198가문이 선정되었습니다.

[표-1] 병역명문가 선정현황

구	분	계	′20년	′19년	′18년	'17년	′16년	′15년	′14년	′13년	′12년	′11년~′04년
가 문	전 국	6,395	1,017	741	714	492	560	466	497	545	301	1,062
	서 울	1,198	187	157	138	82	95	83	100	91	69	196

○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역 이행에 궁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측면에 있어 바람직한 정책으로, 서울시는 2015년에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원·혜택이 뒷받침되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들이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입니다.

[표-2] 서울시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현황

소관위원회	조례안	혜택
교통	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주차요금 20% 감면
문화체육관광	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관람료 면제
문화체육관광	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관람료 면제

- 동 개정조례안 또한 병역명문가 단체의 학교시설사용료 감면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예우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생각됩니다.
- 아울러 사용료 등의 구체적인 감면대상을 정할 때에는 사용료 등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, 공공시설의 목적,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용자 간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바, 동 개정조례안은 이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.1)
-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병역명문가 단체에 대한 감면율은 국 가유공자 단체나 장애인 단체, 독립유공자 단체와 동일한 수준인 사 용료의 50%로써 형평성 차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.2)

¹⁾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(법제처)

○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6136, 2021.4.13.)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²⁾ 제9조(사용료의 감면) ① 학교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.

^{1.} 전액면제

가.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

^{2. 100}분의 60 감면

가.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

^{3. 100}분의 50 감면
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

나.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

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

라.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

마. 해당 학교의 동창회 및 학교규정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

^{4.} 학교장과 사용기관의 협의에 따라 감면
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

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험, 자격검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

② ~ ③ (생략)

관계 법령

병역법

[시행 2020. 12. 22.] [법률 제17684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82조(병역의무 이행의 장려)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(宣揚)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3. 6. 4.]

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

[시행 2020. 9. 10.] [병무청훈령 제1728호, 2020. 9. 10., 일부개정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병역법」 제82조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궁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 3. 11.>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 11. 21>

- 1. "병역명문가"란 3대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(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)을 말한다. 다만,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. <개정 2010. 5. 4., 개정 2012. 11. 21., 단서신설 2012. 11. 21., 개정 및 단서삭제 2013. 12. 11., 개정 2019. 3. 11., 2020. 2. 26.>
- 2. "부상금"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0. 5. 4., 2012. 11. 21., 2013. 12. 11., 2019. 3. 11.>
- 3. "병역명문가 가족"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 <신설 2012. 11. 21., 개정 2013. 12. 11., 2020. 2. 26.>
- 4. "병역명문가 대표"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. <신설 2016. 1. 8., 개정 2019. 3. 11.>
- 제2조의2(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) ① 지방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. 다만, 직계비속 여성이 현역복무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이행자에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11., 2020. 2. 26.>
 - 1.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(전투·의무·해양경찰, 경비교도 대원, 의무소방원,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) 복무를 마쳤거나,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 중 「군인사법」제 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(입영 후 신분이 변동되어 이전 신분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경우 포함). 다만, 현역 복무 중 전사·순직한 사람이나 전상·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있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및 단서신설 2019. 3. 11., 개정

2020. 2. 26.>

- 2. 국민방위군,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·25 전쟁에 참전한 사람
- 3.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강점기에 독립군·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) <개정 2020. 2. 26.>
- ②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6. 11. 30., 본항개정 2019. 3. 11.>
- 1. 병역판정검사·입영 기피,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
- 2.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- 3. 군무 이탈 사실이 있는 사람. 다만, 현역 등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
- 4. 다음 각 목에 따라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
 - 가. 귀휴 전역 정교사(구 병역법 1957. 8. 15., 제8조)
 - 나. 해군 예비역장교·하사(구 병역법 1981. 12. 31., 제62조의2)
 - 다. 교대예비역 하사(RNTC)(구 병역법 1983. 12. 31., 제51조)
 - 라. 예비역 공중보건의사(구 병역법 1978. 12. 5., 제30조)
 - 마. 자연계교원(구 병역법 1981. 6. 5., 제39조의 2)
 - 바. 특수전문요원(구 병역법 1981. 6. 5., 제30조의 2)
 - 사. 승선근무예비역(병역법 제21조의2)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비속 남성 중「병역법」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해가 되기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 <본항신설 2019. 3. 11., 개정 2020. 2. 26.>

[본조신설 2013. 12. 11.]

제3조(사업계획의 수립 등) 병무청장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(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본조개정 2013. 12. 11.]

제2장 병역명문가 신청 및 선정 <개정 '10.5.4>

- 제4조(병역명문가 신청) ①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적등본 및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3. 11.>
 - ② 장교, 준사관,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은 해당 부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·25 전쟁에 참전한 사람, 독립군·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인정하여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3. 11., 2020. 2. 26.>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병역명문가 신청서 및 관련 자료 등은 방문, 우편, FAX 및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. <본항신설 2019. 3. 11.>

[본조개정 2013. 12. 11.]

- 제5조(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)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식의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5. 4., 본항개정 2019. 3. 11.>
 -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

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9. 3. 11.>

- 제6조(병역사항의 확인)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(별지제4호서식)을 작성하고, 병적기록에 의하여 전 가족에 대한 군별, 군번, 계급, 입영일, 전역일 등 병역사항을 확인·기재하고,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한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4. 16., 2012. 2. 1., 2013. 12. 11.>
 -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만으로 병역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군에 조회하고,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.
 -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사항 확인 지연 등으로 그달에 병역명문가로 선정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가문은 다음 달 선정대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5. 4., 개정 2019. 3. 11.>
- 제7조(병역명문가 선정 등<개정 2010. 5. 4.>)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별표 1의 병역명문가 가계도, 별지 제4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,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명문가 대표자 명단 등을 포함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10. 12., 2010. 5. 4., 2012. 11. 21., 2013. 12. 11., 본항 개정 2019. 3. 11.>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집중 접수기간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<본항신설 2019. 3. 11.>
- 제8조(신청결과 안내) 지방병무청장은 신청가문 중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는 선정결과와 표창을 위한 심사절차를 통보하고,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5. 4.>
- 제9조(업무분장)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지방병무청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<개정 2006. 10. 12., 2010. 5. 4., 2019. 3. 11.>
 - 1. 민원실 소관부서(「병무청 사무분장 규정」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.)의 장: 병역명문가 병역 사항 확인 <개정 2008. 4. 16., 2010. 5. 4., 개정 2019. 3. 11.>
 - 2. 운영지원과장: 병역명문가 접수·선정 및 결과보고 등 <개정 2008. 4. 16., 2010. 5. 4., 개정 2019. 3. 11.>
- 제10조(문서 관리) 지방병무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와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,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개인별 병적조회(확인)서 등을 가문별로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10. 12., 2008. 4. 16.>
- 제10조의2(전산정리)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문별 병역이행자, 우대시설 및 행사 참여 희망자 등을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3. 11.>

[본조신설 2013. 12. 11.]

제3장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<개정 2010. 5. 4., 2019. 3. 11.>

- 제11조(설치) 병무청장은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0. 5. 4., 2019. 3. 11.>
- 제1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5 인 이상의 외부인사로 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. <개정 2006. 10. 12.>
 -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병역명문가 선정 등 업무 담당사무관이된다. <개정 2005. 5. 26., 2006. 10. 12., 2008. 4. 16., 2012. 2. 1., 2013. 10. 4., 2017. 11. 7.,

2019. 3. 11.>

- 제1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16. 1. 8.>
 - 1.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<신설 2019. 3. 11.>
 - 2. 표창 심사기준 <개정 2019. 3. 11.>
 - 3. 표창대상가문의 선정
 - 4. 그 밖에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 <개정 2019. 3. 11.>
 - ② 위원회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표창심사 시 여성의 군복무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. 8.>
- 제14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
제4장 표창

- 제15조(주관) 혁신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부포상을 추진한다. <개정 2005. 5. 26., 2006. 10. 12., 2008. 4. 16., 2010. 5. 4., 2012. 2. 1., 2013. 10. 4., 2017. 11. 7.>
- 제16조(표창 및 부상금) ① 병역명문가 표창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5. 4., 2019. 3. 11.>
 - 1. 대 상: 대통령상
 - 2. 금 상: 국무총리상
 - 3. 은 상: 국방부장관상
 - 4. 동 상: 병무청장상 및 그 밖의 유관기관장상 <개정 2019. 3. 11.>
 - ② 삭제 <2008. 12. 12.>
 - ③ 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 명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12. 12.>

제5장 선양 및 홍보

- 제17조(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운영<개정 2010. 5. 4., 2019. 3. 11.>)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"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"을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10. 12., 2008. 4. 16., 2010. 5. 4., 2012. 2. 1., 2013. 10. 4., 2017. 11. 7., 2019. 3. 11.>
 - ② 삭제 <2006. 10. 12.>
- 제18조(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 < 개정 2006. 10. 12., 2008. 12. 12., 2010. 5. 4., 2012. 11. 21., 2019. 3. 11. >)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명문 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(출납)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10. 12., 2008. 4. 16., 2008. 12. 12., 2010. 5. 4., 2012. 11. 21., 2019. 3. 11.>
 -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병무청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다. <본항신설 2019. 3. 11.>
 -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 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. <본항개정 2016. 1. 8., 2019. 3. 11.>
 -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영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11. 21., 2019. 3. 11.>

-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 추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11. 21., 개정 2019. 3. 11.>
- 제18조의2(병역명문가 대표의 변경) ① 병역명문가 대표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병역 명문가 대표 변경을 원하는 가문은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신청서(별지 제13호서식)를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확인 후 병역명문가 대표를 변경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,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6. 1. 8.]
- 제19조(홍보) 혁신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 홍보를 주관하고, 지방병무청장은 언론 보도 등 자체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5. 26., 2006. 10. 12., 2008. 4. 16., 2010. 5. 4., 2012. 2. 1., 2013. 10. 4., 2019. 3. 11.>
- 제20조(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<2008. 12. 12., 2020. 9. 10.>)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 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12. 12., 2010. 5. 4., 2012. 2. 1., 2012. 11. 21., 2017. 11. 7., 2019. 3. 11.>
 -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1.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
 - 2. 주민자치센터,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
 - 3.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·배포
- 4.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[본조개정 2020. 9. 10.]